

간금동의

심의결과 위안대토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안자
5	3	1984. 1. 21	총재 최창각

의안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일부 개정

의결사항 : 1.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이월을 불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 실시일자 : 1984. 1. 23

제외관계 법구조항 : 한국은행법 제72조

제외취지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유인을 제고 하는 한편 최근의 금융기관 수기억화를 감안하여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외할



참고사항 : 1. 제의관계 법조항

한국은행법 제72조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제69조에 규정
된 여신업무에 관한 이율을 정한다.

(이하 생략)

2. 첨부들

가. 한국은행 여신업무이율 추이

나. 한국은행 대출금현황



(붙임)

한국은행의 증빙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 일부개정(안)

현행		개정(안)	
1. 여신업무이율		1. 여신업무이율	
구분	이율	구분	이율
재활의	상업어음 연 5.0%	재활의	상업어음 (현행과 같음)
단	수출어음, 외화표시 공급어음 연 5.0%	다	수출어음, 외화표시 공급어음
	농수산물 수출준비어음 연 5.0%		농수산물 수출준비어음
	농업, 수산업 회원사업어음 (농협 및 수협 회계부)		농업, 수산업 회원사업어음 (농협 및 수협 회계부)
	군수산업어음 연 5.0%		군수산업어음
보	기타어음 등 증권	보	기타어음 등 증권
대	전반월 증빙기관(물, 거래 평균 금리 (소수점이하 둘째자리 부리 는. 떼어버림)에 1% 「포인트」를 가산한 이율, 다만, 증빙통화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왕자머상은 별도 의 이율을 적용한다.	대	(현행과 같음)
출		출	

현

행

개

정

(안)

2. 기타어음등 증원담보대출에 대한 특별이할 적용대상

가. 연 8.0% 적용대상

- (1) 1981년도 수출산업설비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
- (2) 1981년도 중소기업특별관리설비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
- (3) 「에너지」 협약 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

나. 연 8.0% 적용대상

- (1) 중소기업차금 지원을 위한 대출
- (2) 정부의 정책사업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대출
- (3) 기타 한국은행 총재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금지원을 위한 대출

다. 연 5.0% 적용대상

기업체질 강화대책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토지개발 채권보유지원을 위한 대출

3.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이자율 : 연 5.0%

2. 기타어음등 증원담보대출에 대한 특별이할 적용대상

가. 연 6.0% 적용대상

(1) ~ (3) (현행과 같음)

(4)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

(5) 정부의 정책사업 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을 위한 대출

(6) 기타 한국은행 총재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금지원을 위한 대출

나. 연 5.0% 적용대상

기업체질 강화대책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토지개발 채권 보유 지원을 위한 대출

3. (현행과 같음)

397

<첨부분>

가. 한국은행 여신업무 이율추이

(단 %)

구분	20.1.12	6.5	9.16	11.8	11.20	81.4.4	11.9	11.28	12.29	82.1.14	3.5	3.29	5.7	6.28	83.1.24
상업어음 { 적격 〃 키카	20.5	17.5	17.5	15.5	15.5	15.5	14.5	12.5	10.5	6.5	6.5	5.0	5.0	5.0	5.0
	21.0	20.0	18.0	16.0	16.0	16.0	15.0	13.0	11.0	7.0	7.0	5.5			
수출어음 외화포시 공급어음 농수산물 수출잔비어음	100(70)	100(70)	100(70)	100(70)	100(70)	100(70)	100(70)	100(60)	100(50)	5.0	5.0	5.0	5.0	5.0	5.0
농업, 수산업, 회원사업어음 (농협, 및 수협 제외분)	14.0	100(70)	100(70)	100(70)	100(70)	100(70)	100(70)	100(60)	100(50)	5.0	5.0	5.0	5.0	5.0	5.0
군수산업어음	18.0	18.0	17.0	15.0	15.0	15.0	14.0	12.5	10.5	6.5	6.5	5.0	5.0	5.0	5.0
주요원자재 수입어음	18.0	18.0	17.0	15.0	15.0	15.0	14.0	14.0	14.0	-	-	-	-	-	-
T에너지, 철약 시설어음	-	-	-	7.0	7.0	7.0	7.0	7.0	7.0	5.0	-	-	-	-	-
기타어음 4 한도	18.0	20.0	18.0	16.0	{ A1: 14.0 A2: 17.0	{ A1: 16.0 A2: 17.0 A3: 12.0	{ A1: 15.0 A2: 18.0 A3: 12.0	{ A1: 14.0 A2: 17.0 A3: 12.0	{ A1: 13.0 A2: 16.0 A3: 11.0	A1: 12.0 A2: 10.0 A3: 5.0 (사실)	A1: 12.0 A2: 9.0 A3: 5.0	A1: 7.0 A2: 7.0 A3: 5.0	A1: 9.0 A2: 7.0 A3: 5.0	A1: 7.0 A2: 6.0 A3: 5.0	A1: 8.0 A2: 6.0 A3: 5.0
B 한도	27.0	26.0	24.0	22.0	22.0	22.0	21.0	20.0	19.0	18.0	18.0	18.0	18.0	12.5	전반별 call 평균 17%
특별융자	100(70)	100(70)	100(70)	100(70)	100(70)	100(70)	100(70)	100(60)	100(50)	5.0	5.0	5.0	5.0	5.0	5.0

주: 1) 81.3.2 이전은 우대 적격어음 2) () 내는 1982.6.30까지 잠정이율임

나, 한국은행 대출금 상황

(단위: 원)

	관				증		
	80 말	81 말	82 말	83 말	81 중	82 중	83 중
상업어음 재발인	2,973	5,929	9,800	9,550	2,956	3,071	△ 50
수출지원금채 ¹⁾	15,330	17,133	17,497	17,390	1,803	364	△ 1,077
농수산자금	1,211	1,280	1,008	1,425	69	△ 272	△ 417
군수산업지원금채	167	119	222	50	△ 48	103	△ 172
「에너지」 절약 시설자금	4	711	1	-	707	△ 710	△ 1
토지개발채권 담보 대출	-	611	64	-	611	△ 547	△ 64
일반자금	3,966	7,400	12,031	22,579	3,434	4,628	10,548
A 환도	3,066	5,400	10,460	22,039	2,334	5,057	71,579
B 환도	900	2,000	1,571	540	1,100	△ 429	△ 1,111
기타 ²⁾	997	528	985	981	△ 269	441	△ 4
소계	24,448	33,711	41,389	51,955	9,263	7,678	10,566
비료자금	2,700	3,700	4,700	5,700	1,000	1,000	1,000
합계	27,148	37,411	46,089	57,655	10,263	8,678	11,566

주: 1)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포함

2) 특별융자,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기금대여금, 기계공업육성자금기금대여금, 지방산업육성자금